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4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4. 16 | 고 성 군 수 |
| 나. 회 부 일 자 : 2003. 4. 16 | |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4. 22 |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개정이유

- 소년소녀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포함되므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장학생의 지급대상기준 변경(안 제2조제1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명칭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변경 되었으며, 2000. 9 소년소녀가장 명칭이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체대원(소년소녀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포함됨에 따라 이중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하고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기준이 광범위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소년소녀가장 명칭이 언제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 되었습니까?
- 답 : 종전의 소년소녀가장·세대원 명칭이 2000. 9 소년소녀가정 (Youth family)으로 변경 되었습니다.(아동복지업무지침 p32참조)
- 문 :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매월 지원되는 금액은?
- 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따른 생계비 이외 매월 1인당 65,000원 지원됩니다.
- 문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금액은?
- 답 :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되고 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특별장학금은 중학생 1회 200천원, 고등학생 1회 300천원이며, 일반장학금은 중학생 1회 150천원, 고등학생 1회 200천원입니다.
- 문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시기는?
- 답 :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해당자에게는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지급합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4.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